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권수정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60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권수정 의원(1명)
찬 성 자 : 송정빈,이준형,송아람,
안광석,이병도,노승재,
박기재,김기덕,이석주,
홍성룡 의원(10명)

1. 제안이유

현재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하고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은 혐오표현 피해를 받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시장은 혐오표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등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모든 사람이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에 공감하고 시장의 혐오표현 피해방지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혐오표현 피해를 받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정보제공

2. 혐오표현의 확산 방지

3.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4. 그 밖에 시장이 혐오표현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 등) ① 시장은 혐오표현 피해방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혐오표현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혐오표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해당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제6조(교육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407,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407,800천원으로 연평균 281,5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5조 제1호, 제2호는 ‘혐오표현 피해 시민에 대한 상담 제공’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수행 단체 5곳을 공모·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하고, 보조금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제5조 제3호의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는 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제6조 제1항, 제2항은 혐오표현 피해방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407,800천원

- 총비용 = 상담 제공 및 혐오표현 확산방지 비용 +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 방지 비용 + 교육 및 홍보 비용
= 500,000천원 + 262,800천원 + 645,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상담 및 정보제공(제5조 제1호) 협오표현의 확산 방지(제5조 제2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제5조 제3호)	52,560	52,560	52,560	52,560	52,560	262,800
	협오표현 피해방지 필요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 등 실시 (제6조 제1항) 협오표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실시 (제6조 제2항)	129,000	129,000	129,000	129,000	129,000	645,000
	소계(b)	281,560	281,560	281,560	281,560	281,560	1,407,800
	총비용(b-a)	281,560	281,560	281,560	281,560	281,560	1,407,800

1) 상담제공 및 협오표현 확산 방지 관련 수행단체 보조금 = $\sum_{i=1}^5$ (연간보조금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100,000천원

≙ 선정단체 개소 × 보조금

≙ 5개소 × 20,000천원

※ 제5조 제1호, 제2호는 협오 피해 시민 상담 제공 및 협오표현의 확산 방지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수행단체를 5곳 공모·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조금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선정 단체 1곳 당 보조금 20,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원 - 선정단체 보조금 지원 20,000,000원*10개 =200,000천원

자료 : 2020년 서울시 인권담당관 사업별설명서 재작성

2) 피해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관련 피해구제위원회 운영 비용 = $\sum_{i=1}^5$ (연간위원회운영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52,560천원

※ 제5조 제3호의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는 협오표현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사업내용

- 인권침해사건의 효율적 조사 및 판단, 후속조치 등 권고 이행 관리로 시민 인권침해 구제의 완결성 및 효과성 제고
- 시민인권배심원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사회적 동의수준 제고 및 시민참여 제공

- 사업예산 : 52,560천원

자료 : 2020년 서울시 인권담당관 사업별설명서 재작성

3) 교육 및 홍보 비용 = $\sum_{i=1}^5$ (연간교육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129,000천원

※ 제6조 제1항, 제2항은 혐오표현 피해방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개최 및 홍보 자료 제작으로 전제하고,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 사업목적

- 인권정책 홍보를 통한 인권도시 서울 조성
-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진 도모

- 사업예산 : 129,000천원

- 사무관리비(홍보자료 등 제작) : 48,000천원
- 행사운영비(시민참여 행사 등) : 81,000천원

자료 : 2020년 서울시 인권담당관 사업별설명서 재작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무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